

의안번호	2219635
의 퇴 인	정혜경 의원
회 답 일	2026.7.6.
추계번호	26B3170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퇴직급여제도의 설정)	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 < 단서 삭제 > <u>다만,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,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의무규정
2	안 제4조의2(퇴직급여제도 가입 및 변경) 신설	사용자가 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, 근로자는 자신이 가입할 제도를 선택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근로자는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다.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8조(과태료)	×	-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참조
2	안 부칙 제2조(퇴직급여제도 조기 도입 지원)	—	- 미대상 - 개정안은 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가입할 제도를 선택하도록 하고,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국가 재정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,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배제한 현행법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퇴직급여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 관련한 기관부담금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다만,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평균임금과 근무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나, 현시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,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규모와 이들의 평균임금 및 근무기간 등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.go.kr